

## 2022년 수성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 
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9월 2일  
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임용분야 및 인원

| 임용분야                    | 근무예정<br>부서 | 임용직급                       | 언어 | 임용<br>인원 | 임용<br>기간 |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외국인<br>관광<br>프로그램<br>운영 | 관광과        | 지방행정<br>주사보<br>(일반<br>임기제) | 영어 | 1명       | 2년       | - 외국인 체험·교육 프로그램 운영<br>- 외국인 체험·교육 통역 및 홍보물 번역<br>-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마케팅<br>- 외국인 홍보대사 운영<br>- 영어 페이스북 운영<br>-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|

※ 업무상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, 이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 
범위에서 연장 가능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)

### 2 법령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
-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-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」

### 3 법령근거

---

#### ■ 공통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연령 : 만 20세 이상
- 성별 : 제한 없음 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거주지(지역) 제한 : 지역제한 없음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마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

바. 안전 감독 업무, 인·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

사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. 다만,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.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## ■ 임용분야 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| 임용분야                    | 자 격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외국인<br>관광<br>프로그램<br>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br/>【관련분야】통·번역, 국내외 관광기획, 관광 마케팅, 관광객 유치 등의 실무경력<br/>※ 우대사항 : 해당언어 통·번역 관련 학위 소지자</li> </ul> |

- 1)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**이 지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- 2)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: **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·직위가 상세히 명시**되어야 함
- 3) 전임근무(8시간/1일)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**주당 근무시간이 명시**되어야 하며(예시:주20시간근무)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## 4 보수수준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등에 따라 **연봉 하한액 책정**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| 상 한 액    | 하 한 액   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7급(상당) | 63,693천원 | 45,237천원 |

※ 연봉 외 급여(각종 수당)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 
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■ 시험일정

| 응시원서 접수기간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    | 면접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종합격자 발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2022. 9. 14.(수)<br>~ 9. 16.(금) | 2022. 9. 23.(금) 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<br>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suseong.kr">www.suseong.kr</a> ) 게시 |          |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

### ■ 시험방법

#### ○ 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▶ 서류전형 기준: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,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
- 합격자 발표: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([www.suseong.kr](http://www.suseong.kr))에 공고

#### ○ 2차 면접시험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(분야별 20점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- ※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(모두 불합격인 경우)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#### 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([www.suseong.kr](http://www.suseong.kr))에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 응시원서 접수

- 교부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[www.suseong.kr](http://www.suseong.kr))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을 출력하여 사용
- 접수기간 : 2022. 9. 14. ~ 9. 16. (3일간) (09:00~18:00)
- 접수장소 : 수성구청 행정지원과(본관 3층)
-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등기)
  -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,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  - 주소 : 우(42086)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, 수성구청 행정지원과(인사팀)
  - ※ 마감일 우편접수 시 사전 유선연락(☎053-666-2234)
  - ※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## 7 제출서류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(별지서식 제1호)
- 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 제2호)
  - 응시수수료 : 수입증지(7,000원)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입
  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- 이력서 1부(별지서식 제3호)
  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자기소개서 1부(A4용지 2~3매)(별지서식 제4호)
-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서식 제5호)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6호)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7호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 -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  -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(별지서식 제8호) 제출

-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
  -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
  - ▶ 재직기간, 직위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, 연락처 기재
  - ▶ 경력증빙자료(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)
    -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    -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
⇒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  - ▶ 경력(재직)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9호) 추가 제출(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)
-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-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10호)

## 8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  - ※ 최종결과 발표 수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

-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,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관광과,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관광과 관광정책팀: ☎053-666-4912

- 행정지원과 인사팀: ☎053-666-2234